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: 2014. 04. 01. 개정: 2015. 06. 05.

담당: 입학관리팀(950-5403)

목 차			
제1조(목적)	제2조(명칭)	제3조(조직)	제4조(직무)
제5조(기능)	제6조(회의 운영)	제7조(관계자 회의 참석)	제8조(행정사항)
제9조(세칙)		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15조에 따라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기능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2015.02.06)

제2조(명칭) 이 위원회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라 한다.(개정2015.02.06)

제3조(조직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,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(개정2015.06.05)

제4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, 이를 보관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, 심의한다.

- 1. 입학전형 시기 및 절차, 방법에 관한 사항(개정2015.02.06)
- 2. 입학전형 관리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(개정2015.02.06)
- 3. 입학사정 및 발표, 등록에 관한 사항(개정2015.02.06)
- 4. 기타 입학전형과 관련된 제반 사항(개정2015.02.06)

제6조(회의 운영) ①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.
- ③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관계자 회의 참석) 위원장은 입시와 관련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고등학교 진학지도 교사 및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.

제8조(행정사항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의결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세칙)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1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15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.